

『베트남, 신규 조립, 제조 및 수입된 이륜 오토바이 및 이륜 모페드의 레벨 4 배출가스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안』 심층분석 보고서

2025. 08.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711
통보국	베트남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47 (2024)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제정 세부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10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5.7.8. 베트남등록국은 신규 조립, 제조 및 수입된 이륜 오토바이 및 모페드의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및 유럽연합(EC)의 차량 형식승인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유로4(Euro 4) 기준에 상응하는 레벨 4 배출가스 관리 및 시행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국가기술규정안을 통보함
- (규제요지) 이륜 오토바이 및 모페드의 품질 관리, 기술적 안전성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배출 제한값, 시험 절차 및 방법뿐만 아니라 시험의 관리 및 시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

TBT 통보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NM/351 	통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07.08.
		고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조립, 제조 및 수입된 이륜 오토바이 및 이륜 모페드의 기체 오염물질 배출 4단계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안 ▪ Draf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the fourth level of gaseous pollutants emission for new assembled, manufactured and imported two-wheeled motorcycles and two-wheeled mopeds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등록국 ▪ Viet Nam Register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건강 및 안전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최종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10.01.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09.06.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04.01.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p>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 오토바이 및 이륜 모페드 ▪ Two-wheeled motorcycles and two-wheeled mopeds 		
<p>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륜 오토바이 및 이륜 모페드의 신규 생산, 조립 및 수입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의 품질, 기술적 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관한 시험, 검사,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개인 		
<p>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 	<p>HS Co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11

2

제정 세부내용

□ (제1부) 일반 규정 주요 내용

- 본 기술규정은 생산, 조립 또는 수입되는 신제품 이륜 오토바이 및 이륜 모페드 (이하 “차량”)에 대하여 레벨 4 배출가스 검사와 관련하여 배출가스 허용기준, 시험 항목 및 시험 방법, 검사 이행 및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함
- 본 기술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표 1] 용어 정의 주요 내용

구분	제정안
이륜 모페드 (Two-wheeled moped)	작동 배출가스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용적이 50cm ³ 를 초과하지 않는 열기관(내연기관)을 장착하고 설계된 최고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로 주행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차량을 의미함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차종 L1)
이륜 오토바이 (Two-wheeled motorcycle)	열기관(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작동되어 도로주행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차량을 의미함 다만, 모페드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차종 L3)
레벨 4 (Level 4)	본 기술규정에 규정된 새로 생산·조립·수입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UNECE) 및 유럽연합(EC)의 차량 형식승인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유로 4 (Euro 4)의 배출가스 기준에 상응함
유형 I 시험 (Type I - test)	냉간 상태에서 엔진을 시동한 후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평균 질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의미함
유형 II 시험 (Type II - test)	정속 공회전 및 고속 공회전 상태인 엔진의 일산화탄소 (CO)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의미함
유형 III 시험 (Type III - test)	엔진 크랭크케이스로부터 배출되는 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의미함
유형 IV 시험 (Type IV - test)	단일 가스 연료 사용 차량 및 이중 가스 혼합연료 사용 차량을 제외한 강제 점화식 엔진 장착 차량의 연료 증발 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의미함

□ (제2부) 기술 규정 주요 내용

- 이륜 오토바이 및 이륜 모페드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허용 한도 및 TCVN 13062:2020호, TCVN7358:2010호의 국가기준 및 본 부의 제2조, 제3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규정에서 발행된 규정 (EU) 제134/2014호,

이의 2016년 제1개정본, 이의 2017년 제2개정본 및 규정 (EU) 제168/2013호에 따라 관련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함

○ 이륜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됨

[표 2] 이륜 오토바이 배출가스 규제 주요 내용

구분	제정안																				
유형 I 시험에 따른 규제	<p>(2.1) 본 기술규정 제3부의 제3조 제3.2.1호에 따른 유형 I 시험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의 평균 측정 질량은 아래 표에 제시된 각 물질별 허용 한도 값보다 미만이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표 - 이륜 오토바이의 레벨 4 배출가스 허용 한도 값</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mg/km</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엔진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일산화탄소(CO)의 질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탄화수소(HC)의 질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질소산화물(NOx)의 질량</th> </tr> <tr> <th></th> <th style="text-align: center;">L₁ (mg/km)</th> <th style="text-align: center;">L₂ (mg/km)</th> <th style="text-align: center;">L₃ (mg/km)</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제점화식 엔진 또는 강제점화식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 $V_{max} < 130$ km/h</td> <td style="text-align: center;">1140</td> <td style="text-align: center;">380</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제점화식 엔진 또는 강제점화식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 $V_{max} > 130$ km/h</td> <td style="text-align: center;">1140</td> <td style="text-align: center;">17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압축착화식 엔진 또는 압축착화식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r> </tbody> </table>	엔진 종류	일산화탄소(CO)의 질량	탄화수소(HC)의 질량	질소산화물(NOx)의 질량		L ₁ (mg/km)	L ₂ (mg/km)	L ₃ (mg/km)	강제점화식 엔진 또는 강제점화식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 $V_{max} < 130$ km/h	1140	380	70	강제점화식 엔진 또는 강제점화식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 $V_{max} > 130$ km/h	1140	170	90	압축착화식 엔진 또는 압축착화식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	1000	100	300
	엔진 종류	일산화탄소(CO)의 질량	탄화수소(HC)의 질량	질소산화물(NOx)의 질량																	
		L ₁ (mg/km)	L ₂ (mg/km)	L ₃ (mg/km)																	
	강제점화식 엔진 또는 강제점화식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 $V_{max} < 130$ km/h	1140	380	70																	
	강제점화식 엔진 또는 강제점화식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 $V_{max} > 130$ km/h	1140	170	90																	
압축착화식 엔진 또는 압축착화식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	1000	100	300																		
유형 II 시험에 따른 규제	<p>(2.2) 본 기술규정의 제3부의 제3조 제3.2.2호에 따른 유형 II 시험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 일산화탄소(CO) 농도의 허용 한도는 다음과 같음</p> <p>(2.2.1) 정상 공회전 상태에서는 CO의 최대 허용 농도는 제작사 또는 조립 업체의 공표값을 따름</p> <p>다만, 해당 농도는 부피의 0.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p> <p>(2.2.2) 고속 공회전 상태 (엔진속도 $\geq 2,000$r/min)에서는 CO의 최대 허용 농도는 부피의 0.3%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람다 값은 $01 \pm 0,03$의 범위를 충족하거나 제조사, 조립 업체, 수입자가 제출하는 수치에 따라야 함</p>																				
유형 III 시험에 따른 규제	<p>(2.3) 본 기술규정의 제3부 제3조3.2.3항에 명시된 유형 III 시험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 엔진 크랭크케이스 통풍시스템은 크랭크케이스로부터 외부 환경으로 어떤 가스도 배출되어서는 안 됨</p>																				
유형 IV 시험에 따른 규제	<p>(2.4) 본 기술규정의 제3부 제3조3.2.4항에 규정된 유형 IV 시험에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 증발된 연료량은 1회 시험당 2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p>																				

- 이륜 모페드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한도 및 시험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표 3] 이륜 모페드의 배출가스 규제 주요 내용

구분	제정안									
유형 I 시험에 따른 규제	<p>(3.1) 본 기술규정의 제3부 제3조3.3.1항에 명시된 유형 I 시험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 CO, THC, NOx 가스의 평균 측정 질량은 아래 표에 제시된 각 물질별 허용 한도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됨</p> <p style="text-align: center;">표 - 이륜 모페드의 레벨 4 배출가스 허용 한도 값</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mg/km</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일산화탄소 (CO)</th> <th>탄화수소 (HC)</th> <th>질소산화물 (NOx)</th> </tr> </thead> <tbody> <tr> <td>L₁ (mg/km)</td> <td>L₂ (mg/km)</td> <td>L₃ (mg/km)</td> </tr> <tr> <td>1000</td> <td>630</td> <td>170</td> </tr> </tbody> </table>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L ₁ (mg/km)	L ₂ (mg/km)	L ₃ (mg/km)	1000	630	170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L ₁ (mg/km)	L ₂ (mg/km)	L ₃ (mg/km)								
1000	630	170								
유형 II 시험에 따른 규제	<p>(3.2) 본 기술규정 제3부 제3조3.3.2항에 따라 유형 II 시험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CO)의 최대 허용 농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p> <p>(3.2.1) 정상 공회전 상태에서의 일산화탄소(CO) 최대 허용 농도는 제작사 또는 조립 업체가 공표한 값을 따름</p> <p>다만, 해당 농도는 부피기준 0.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p> <p>(3.2.2) 고속 공회전 상태 ($\geq 2,000\text{r/min}$)에서는 엔진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CO)의 농도가 부피의 0.3%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p> <p>이 경우 람다 값은 1 ± 0.03의 범위를 충족하여야 하거나 제작사, 조립 업체 또는 수입자가 제공한 수치에 따라야 함</p>									
유형 III 시험에 따른 규제	<p>(3.3) 본 기술규정 제3부 제3조3.3.3항에 따른 유형 III 시험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 크랭크케이스 통풍장치는 크랭크케이스로부터 어떠한 가스도 외부 환경으로 배출되어서는 안 됨</p>									
유형 IV 시험에 따른 규제	<p>(3.4) 본 기술규정 제3부 제3조3.3.4항에 따른 유형 IV 시험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 증발된 연료량은 1회 시험장 2그램 초과해서는 안 됨</p>									

□ (제3부) 관리 규정 주요 내용

- 신규 생산·조립·수입 차량은 이륜 오토바이 및 이륜 모페드의 생산, 조립 및 수입 과정에서의 기술적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품질검사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함
- 이륜 오토바이 및 이륜 모페드의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이 적용됨

[표 4] 이륜 오토바이 및 이륜 모페드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확대를 위한 적용 시험 항목

시험 항목										하이브리드 포함 압축점화 엔진 장착 차량	
	단일 연료 차량				이중 연료 차량			혼합 연료 차량		혼합 연료 차량	단일 연료 차량
	E5	LPG	NG/ Biomethane	H2	E5	E5	E5	E5	NG/ Biomet hane	디젤 연료(B5)	디젤 연료 (B5)
LPG					NG/ Biomethane	H2	Ethanol (E85)	H2NG	바이오 디젤 연료		
유형 I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두 종류의 연료 모두 해당)	해당 (두 종류의 연료 모두 해당)	해당 (두 종류의 연료 모두 해당)	해당 (두 종류의 연료 모두 해당)	해당 (두 종류의 연료 모두 해당)	해당 (B5만 해당)	해당
유형 II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두 종류의 연료 모두 해당)	해당 (두 종류의 연료 모두 해당)	해당 (휘발유만)	해당 (두 종류의 연료 모두 해당)	해당 (NG/Biomethane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형 III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형 IV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휘발유만)	해당 (휘발유만)	해당 (휘발유만)	해당 (휘발유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이륜 오토바이의 시험 다음과 같이 실시되도록 규정함

[표 5] 이륜 오토바이 시험 주요 내용

구분	제정안																
유형 I 시험	(3.2.1) TCVN 13062:2020호의 부속서 D에 따라 실시함																
	(3.2.1.2) 차량은 엔진 배기량 및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조건</th> <th>유형</th> </tr> </thead> <tbody> <tr> <td>제1군</td> <td>엔진 배기량 <150 cm³ 및 최고속도(v_{max}) < 100 km/h</td> <td>유형 1</td> </tr> <tr> <td rowspan="2">제2군</td> <td>엔진 배기량 <150 cm³ 및 100 km/h ≤ v_{max} <115 km/h 또는 엔진 배기량 ≥ 150 cm³ 및 v_{max} < 115 km/h</td> <td>유형 2-1</td> </tr> <tr> <td>115 km/h ≤ v_{max} < 130 km/h</td> <td>유형 2-2</td> </tr> <tr> <td rowspan="2">제3군</td> <td>130 km/h ≤ v_{max} < 140 km/h</td> <td>유형 3-1</td> </tr> <tr> <td>v_{max} ≥ 140 km/h 또는 엔진 배기량 > 1500 cm³</td> <td>유형 3-2</td> </tr> </tbody> </table>	분류	조건	유형	제1군	엔진 배기량 <150 cm ³ 및 최고속도(v _{max}) < 100 km/h	유형 1	제2군	엔진 배기량 <150 cm ³ 및 100 km/h ≤ v _{max} <115 km/h 또는 엔진 배기량 ≥ 150 cm ³ 및 v _{max} < 115 km/h	유형 2-1	115 km/h ≤ v _{max} < 130 km/h	유형 2-2	제3군	130 km/h ≤ v _{max} < 140 km/h	유형 3-1	v _{max} ≥ 140 km/h 또는 엔진 배기량 > 1500 cm ³	유형 3-2
	분류	조건	유형														
	제1군	엔진 배기량 <150 cm ³ 및 최고속도(v _{max}) < 100 km/h	유형 1														
	제2군	엔진 배기량 <150 cm ³ 및 100 km/h ≤ v _{max} <115 km/h 또는 엔진 배기량 ≥ 150 cm ³ 및 v _{max} < 115 km/h	유형 2-1														
		115 km/h ≤ v _{max} < 130 km/h	유형 2-2														
	제3군	130 km/h ≤ v _{max} < 140 km/h	유형 3-1														
		v _{max} ≥ 140 km/h 또는 엔진 배기량 > 1500 cm ³	유형 3-2														
	(3.2.1.2) 엔진 시동 직후 시험 주기를 시작																
(3.2.1.3) 주기적 재생 과정의 배출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보유하는 차량의 경우 시험 후 측정된 결과값은 재생계수인 Ki 계수의 값을 곱하여 산정하며, Ki 계수의 값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음																	
(3.2.1.3.1) TCVN 13062:2020호의 부속서 D.10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제작사, 조립 업체 또는 수입자가 제시한 Ki 계수의 값을 적용할 수 있음																	
(3.2.1.3.2) Ki 계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3.2.1.3.3) 제작사, 조립 업체 또는 수입자의 제안으로 모든 오염물질에 적용된 Ki 값은 1.05로 측정																	

	<p>(3.2.1.3.4) 본 기술규정의 제2부 제2조 제2.1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차량 유형에 따라 달라진 배출가스량이 재생 과정 중 배출가스의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주기적 재생 시스템에 대한 시험 과정에 대한 별도의 시험 절차는 적용하지 않음</p> <p>(3.2.1.4) 연속 재생 시스템의 경우 재생 시스템이 없는 차량에 적용한 시험과 동일하게 시험을 실시</p> <p>(3.2.1.5) 시험 횟수</p> <p>(3.2.1.5.1) 시험은 총 3회 실시하여야 하며, 주기적 재생 시스템을 장착된 경우에는 앞서 명시한 재생계수인 K_i 계수의 값을 곱하여 산정함. 각 시험에서 측정된 기체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본 기술규정 제2장 [표 1]에 명시된 각 물질 별 허용 한도 값에 비해 미만이어야 함. 단, 각 기체 오염물질에 대하여 3회의 시험결과 중 1회의 측정값은 허용 한도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 그 초과치는 각 물질 별 허용 한도 값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3회 측정값의 산술평균은 반드시 허용 한도 값 미만이어야 함</p> <p>(3.2.1.5.2) 시험 횟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소할 수 있음</p> <p>(3.2.1.5.2.1) 모든 배출가스의 시험 결과는 V_1의 값이 0.70L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V_1 \leq 0.70$ L) 시험이 1회만 실시</p> <p>(3.2.1.5.2.2) 시험 결과에 따라 V_1의 값이 앞서 설명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V_1 \leq 0.85$ L; $V_1 + V_2 \leq 1.70$ L 및 $V_2 \leq L$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은 2회만 실시하여도 됨</p> <p>여기서, V_1은 첫번째 시험 결과의 값이며 V_2는 두번째 시험 결과의 값이고, L은 각 기체 오염물질별 허용 한도 값임</p>
유형 II 시험	<p>(3.2.2) TCVN 13062:2020호 부속서E에 따라 실시함</p> <p>(3.2.2.1) 해당 시험의 배출가스 측정 결과는 본 기술규정의 제2부 제2조2.2항 CO 농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p>
유형 III 시험	<p>(3.2.3) TCVN 13062:2020호의 부속서 H에 따라 실시함</p> <p>(3.2.3.2) 해당 시험의 결과는 본 기술규정의 제2부 제2조2.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p>
유형 IV 시험	<p>(3.2.4) TCVN 13062:2020호 부속서 F의 제F.3호에 따라 실시함</p> <p>(3.2.4.1) F.3.4.2 부속서에 다른 조화 단계에서 차량이 제F.3.4.2.2호에 따라 침적실에 배치되기 전 샘플링 없이 유형 I 시험 주기 1회 운행해야 함</p> <p>(3.2.4.2)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SHED 시험 시작 전 TCVN 13062:2020호 부속서 F의 F.1항에 따라 조화되어야 함</p> <p>(3.2.4.3) 증발가스 배출 제어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적용</p> <p>(3.2.4.3.1) TCVN 13062:2020호 부속서 F.2에 명시된 노화 절차를 따름</p> <p>(3.2.4.3.2) 차량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하여야 함</p> <p>(3.2.4.5) 해당 시험의 결과는 본 기술규정의 제2부 제2조 제2.4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p>

○ 이륜 모페드의 시험 다음과 같이 실시되도록 규정함

[표 6] 이륜 모페드 시험 주요 내용

구분	제정안
유형 I 시험	(3.3.1) TCVN 13062:2020호 부속서 D 및 본 기술규정 부속서 D에 명시된 주행 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 결과는 본 기술규정 부속서 E에 따른 독립 샘플 채취 방식과 계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p>(3.3.1.3) 주기적 재생 과정의 배출가스 후 처리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시험 후 측정값은 재생계수인 K_i 계수의 값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며 K_i 계수 값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음</p> <p>(3.3.1.3.1) 제조자, 조립 업체, 수입자가 TCVN 13062:2020호 부속서 D.10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제조자, 조립 업체, 수입자가 제시한 K_i 계수의 값을 적용할 수 있음</p> <p>(3.3.1.3.2) 시험을 통하여 K_i 계수의 값을 정함</p> <p>(3.3.1.3.3) 제조자, 조립 업체, 수입자의 요청대로 모든 기체 오염물질에 적용된 K_i 계수의 값을 1.05로 적용할 수 있음</p> <p>(3.3.1.3.4) 제조자, 조립 업체, 수입자가 본 기술규정의 제2부 제3조 제3.1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차량 유형에 따라 달라진 배출가스량이 정기 재생 주기동안 배출가스의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주기적 재생 시스템에 대한 시험 과정은 재생 시스템을 장착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음</p> <p>(3.3.1.4) 연속재생 시스템의 경우 재생 시스템이 없는 차량과 동일하게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함</p> <p>(3.3.1.5) 시험 횟수</p> <p>(3.3.1.5.1) 시험은 총 3회 실시하여야 하며, 주기적 재생 시스템을 장착된 경우에는 앞서 명시한 재생계수인 K_i 계수의 값을 곱하여 산정함. 각 시험에서 측정된 기체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본 기술규정 제2장 [표 1]에 명시된 각 물질 별 허용 한도 값에 비해 미만이어야 함. 단, 각 기체 오염물질에 대하여 3회의 시험결과 중 1회의 측정값은 허용 한도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 그 초과치는 각 물질 별 허용 한도 값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3회 측정값의 산술평균은 반드시 허용 한도 값 미만이어야 함</p> <p>(3.3.1.5.2) 시험 횟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소할 수 있음</p> <p>(3.3.1.5.2.1) 모든 배출가스의 시험 결과는 V_1의 값이 0.70L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V_1 \leq 0.70$ L) 시험이 1회만 실시</p> <p>(3.3.1.5.2.2) 시험 결과에 따라 V_1의 값이 앞서 설명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V_1 \leq 0.85$ L; $V_1 + V_2 \leq 1.70$ L 및 $V_2 \leq L$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은 2회만 실시하여도 됨</p> <p>여기서, V_1은 첫번째 시험 결과의 값이며 V_2는 두번째 시험 결과의 값이고, L은 각 기체 오염물질별 허용 한도 값임</p>
<p>유형 II 시험</p>	<p>(3.3.2) TCVN 13062:2020호의 부속서 E에 따름</p> <p>(3.3.2.2) 해당 시험의 배출가스 측정 결과는 본 기술규정의 제2부 제2제2.2항에 명시된 CO 농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p>
<p>유형 III 시험</p>	<p>(3.3.3) TCVN 13062:2020호의 부속서 H에 따름</p> <p>(3.3.3.2) 해당 시험의 결과는 본 기술규정의 제2부 제2조2.3항에 규정된 조건에 충족하여야 함</p>
<p>유형 IV 시험</p>	<p>(3.3.4) TCVN 13062:2020호의 부속서 F의 제F.3호에 따라 실시함</p> <p>(3.3.4.1) F.3.4.2 부속서에 따른 조화 단계에서 차량이 제F.3.4.2.2호에 따라 침적실에 배치되기 전 샘플링 없이 유형 I 시험 주기 1회 운행해야 함</p> <p>(3.3.4.2)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SHED 시험 시작 전 TCVN 13062:2020호 부속서 F의 F.1항에 따라 조화되어야 함</p> <p>(3.3.4.3) 증발가스 배출 제어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적용</p> <p>(3.3.4.3.1) TCVN 13062:2020호 부속서 F.2에 명시된 노화 절차를 따름</p> <p>(3.3.4.3.2) 차량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하여야 함</p> <p>(3.3.4.5) 해당 시험의 결과는 본 기술규정의 제2부 제2조2.4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p>

- 시험을 위한 연료는 다음의 연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함

[표 7] 시험 연료 선택 주요 내용

구분	제정안
시험을 위한 연료	(일반연료) 휘발유 및 디젤 연료로서 휘발유 • 디젤 및 바이오 연료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에 따른 4레벨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함 (기체 연료) 천연가스 (NG), 액화석유가스 (LPG) 본 기술규정의 부속서 C에 규정된 표준 연료 또는 해당 표준 연료와 상응하는 특성을 가진 연료

□ (제4부) 시행 조직 주요 내용

- 베트남등록국은 본 기술규정 시행을 책임지며 기술규정 발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표 8] 시행 조직 주요 내용

구분	제정안
발효	본 기술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등록, 시험, 인증이 접수된 차량 종류는 접수 시점의 차량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품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시험 및 인증을 진행할 수 있음 본 기술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발급된 배출가스 시험 보고서 및 본 기술규정 제4부 제3조에 따라 발급된 배출가스 시험 보고서는 계속하여 차량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품질 인증에 사용할 수 있음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품질 인증을 받은 이륜 오토바이 또는 2027년 7월 1일 이전에 인증된 이륜 모페드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 또는 배출가스 기준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생산 및 조립을 계속할 수 있음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수입신고필증을 신고하거나 항만에 입항했거나 베트남 국경에 도착한 이륜 오토바이 그리고 2027년 7월 1일 이전에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이륜 모페드에 대해서는 수입 당시 유효한 배출가스 기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본 기술규정에서 인용된 법령 및 문서가 개정, 보완 또는 대체될 경우 해당 법령 및 문서의 개정·보완·대체 내용을 따름

관련 법령 및 표준

○ 법령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2010 년 6 월 17 일자 베트남 국회 법률 제 50/2010/QH12 호.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 조치를 상술한 2011 년 3 월 29 일자 정부 시행령 제 21/2011/NĐ-CP 호.
- 수입 및 국내 제조·조립 자동차에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규정한 2024 년 11 월 15 일자 총리 결정 제 19/2024/QĐ-TTg 호.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규정 (EU) 134/2014, 개정 1:2016, 개정 2:2017; 규정 (EU) 168/2013.

○ 표준

- 국가 표준 TCVN 13062:2020.
- 국가 표준 TCVN 7358:2010.